



# 「경찰공무원 시험대비」 경찰형사법 OX 문제풀이(2)



| 최정훈 교수 | 박문각 경찰학원

- 18. 엄격책임설 -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져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 감정에 반한다. ( )
- 19.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 기대가능성은 없다. ( )
- 20.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절대적 폭력 외에 강제적 폭력 내지 심리적 폭력도 포함된다. ( )
- 21. 나이트클럽 주인이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대가능성을 부정하였다. ( )
- 22.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·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. ( )
- 23. 당국이 피고인이 간부로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 모든 옥내외 집회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집회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,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. ( )
- 24.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,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서 행위자를 기준으로 기대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. ( )
- 25. 강간을 하기 위하여 골목길로 난 피해자의 방 창문에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도주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성립한다. ( )
- 26.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었다면 실해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. ( )
- 27.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받은 경우 사위행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. ( )
- 28.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기 가옥을 방화한 경우,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방화한 때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이다. ( )
- 29. 피고인이 주간에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. ( )
- 30. 강간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해주겠다고 설득하여 그만둔 경우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. ( )
- 31.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탄 술을 피해자 2명에게 나누어주어 마시게 하였다가 먼저 마신 피해자 1명이 술을 토하자 즉시 다른 피해자의 술을 거두어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쏟아버림으로써 그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경우는 중지미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. ( )
- 32. 강간하려고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자 강간행위를 그만둔 경우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. ( )
- 33.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,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·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미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. ( )
- 34. 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 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, 甲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,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. ( )

### 【 정답 및 해설 】

【 정답 】					
18	19	20	21	22	23
○	×	×	○	○	○
24	25	26	27	28	29
×	○	×	×	○	×
30	31	32	33	34	
○	○	○	○	○	

- 18. [해설]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책임 고의는 성립 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는 견해이다. 엄격책임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없다. 따라서 착오에 빠진 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.
- 19. [해설]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있다(대판 1987.7.7, 86도1724)
- 20. [해설] 절대적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.
- 21. [해설]

-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피고인에게 위 학생들 중에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(대판 1987.1.20, 86도874).
- 22. [해설] 대판 1999.7.23, 99도1911
- 23. [해설] 대판 1992.8.14, 92도1246
- 24. [해설]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은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(대판 2004.7.15, 2004도2969).
- 25. [해설] 신체의 일부의 침입이 있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이다(대판 1995.9.15, 94도2561).
- 26. [해설]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

-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(대판 1990.5.25, 90도607).
- 27. [해설]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(대판 2005.9.28, 2005도3065).
- 29. [해설] '거실로 들어가 두리번거리고' 즉 물색행위가 있으므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(대판 2003.6.24, 2003도1985).
- 30. [해설] 대판 1993.10.12, 93도1851
- 31. [해설] 대구지법 1975.12.3, 75노502
- 32. [해설] 대판 1992.7.28, 92도917
- 33. [해설] 대판 1999.4.9, 99도424
- 34. [해설] 대판 2011. 11.10, 2011도10539